

1. 불안정노동의 일상화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지국가의 진화

자본주의

고용과 일의 작동방식 변화

복지국가의 변화

산업 자본주의

1980년대

서비스 경제

포디즘 시스템 대량생산 대량소비

제조업 수익성 하락

「도요타의 린 시스템/ 화대

양극화된 의 서비스직

사회적위험: 실업, 산재, 의료, 노령 ⇒ 사회적 보호 시스템으로서의 사회보험

사회적위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로 인한 돌봄 공백 증가 ⇒ 돌봄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 기업의 핵심역량 집중
- 외주, 하청, 프랜차이징 등 위험의 외주화
- 저임금, 저숙련의 서비스직 확대

⇒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자본주의의 변화와 복지국가

자본주의

고용과 일의 작동방식 변화

복지국가의 역할

가치창출과 자본축적의 원천 변화

1990s 기술혁명의 서막 닷컴붐, 인터넷

2008 기술의 부상&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노동력

생산요소에서 노동 투입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미 낮은 협상력의 노동자들과 자본이 협상할 동기는 점점 줄어 듦.

디지털 자본주의 기술발전의 가속화 긱 경제, 4차산업혁명 플랫폼 경제 등장

데이터(축적)

전통적 사회보장체제의 부정합 문제 복지국가의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 필요

디지털 자본주의 생산요소의 질적변화

전통적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자본**의 질적변화 -> 자본주의 형태와 작동방식이 변화 (이승윤, 2019)

액화노동

(Melting labour)

디지털자본주의

(Digital

Capitalism)

가상토지

(Virtual land)

데이터 자본

(Data capital)

액화노동(Melting Labour) 모호해지는 경계들

- 비생산적인 시간과 생산적인 시간의 경계 (다음 일감 찾기, 대기하기 등)
- 일을 하고 있는 시간과 일을 하고 있는 않는 시간의 경계
- 실직인 상태와 고용인 상태의 경계(바로 고용, 바로 해고)
- 작업장소과 사적공간의 경계
- 일과 쉼의 경계
- 증가하는 기술의 중요성에 비해 숙련형성의 장소, 기회, 정의(의미)가 사적화, 비공식화 되고 있음.
- 고객, 소비자, 고용주, 근로자의 경계

액화노동(Melting Labour) 기업의 비용절감

- 생산에 필요한 자산(property)이 필요 없음 (에어비앤비, 우버, 배달대행업 등): 생산비용절감
- 고용관계의 모호성: 고용주에 대한 규제 및 책임회피가 용이
- 평가자의 다수화 (평점, 별점게임화): 서비스 품질관리 비용의 획기적 절감
- 일감, 건당, 프로젝트방식으로 바뀜: 비생산적인 시간에 대한 비용절감
-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그래서 이미 불안정노동자가 많은 경우 진입을 가능성 높음), 약관 등에 동의하면 됨: 인사, 고용 비용 절감
- 독립계약자들의 고객은 수시로 바뀜, 노동시간은 쪼개지고, 노동의 대가도 쪼개짐: 갈등상황이 생겼을 때 법적책임을 묻기 어려움, 임금과 노동시간 규제 회피 용이.

I. 불안정노동 일상성

■ 노동시장과 일자리의 변화

▶ 플랫폼 노동의 모습은 이전의 전통적 표준고용관계에서 보이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고용
관계의 모호성, 평가자의 다수화, 쉼과 일의 경계, 비생산적인 시간과 생산적인 시간의 모호성,
작업장소와 사적공간 등의 경계가 무너지는 '액화노동(melting labour)'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역사적으로 복지국가는 임금노동자의 소득보장 목적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이러한 기본전제인 '임금노동자'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음

- ✓액화노동은 고용주와 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 ✓생산적인 시간과 비생산적인 시간의 경제가 모호_일을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아도, 대기시간 또는 다음 일감을 찾는 등의 비생산적인 시간 또한 상시적으로 생김
- **✓실업의 의미가 모호**_실업보험 간의 부정합+소득보장에 영향 미침

I. 불안정노동 일상성

■ 불안정성에 대한 기존 연구

첫째

누가 불안정 노동자인가?

둘째

불안정성의 속성

- 불안정노동에 속한 사회경제적 집단이 누구인지를 규명
- 종사상 지위의 취약(vulnerable work), 일용직(disposable work), 임시직(contingent work)이어서 고용안정성이 부재한 임금노동자를 불안정 노동자로 정의
- 프레카리아트(precariat), 잠재실업자
- 다양한 형태의 노동안정성이 결핍된 상태에 집중
- 임금적 측면의 불안정성 +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 사회적 임금으로부터의 배제에 의한 불안정성 + 자원의 결핍에 대한 불안성정 등이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불안정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함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전히 또는 더욱 높아진 상품화된 노동의 '*시장의존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을 위해 노동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들의 모습

2. 산재보험의 한계들

오래된 산재보험

- 한국의 산재보험
- 적용 대상
 - ✓ 당연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사업에 해당
- **재원**: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용자 보험료 부담원칙**
 - ✓ 사업주에게는 법적 금전적 위험부담을 분산시켜주고 노동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확보
- 산재의 판정 조건
 - ✓ 산재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으로 정의
- ▶ '업무상'이라는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 근로계약을 기초로 고용주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야 업무상 재해 책임이 드러날 수 있음
- ▶ 업무상 재해는 **업무기인성**이 존재해야 함 (시간·장소·신체 부위적으로 연계되어 발생해야 함)

다만, 하청노동시장의 확대, 노동의 액화(the melting of the labour)에 따라, 고용주의 모호성, 일과 쉼의 모호성, 작업환경의 비물질화, '업무상'의 경계가 모호점에 따라, 제조업 기반의 특정한 노동형태와 노동시장을 전제하여 발전한 한국의 오래된 산재보험과 **부정합**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음

- 왜 한국의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가?
- 왜 한국의 사용자는 노동자를 위한 최 소한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지 못 하는가?
- 왜 노동자는 아파도 일하는가?
- ➢ 왜 노동자는 아파질 수 있어도 일을 지 속하는가?

불안정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제도간의 부정합성을 분석하 기 위해 실시한 질적연구 결 과 산재보험제도의 다차원적 허구성이 드러남.

자: 울
44(2),
노동자
0.
불안정
. 한국
의 사
과 사
과 사

■ 1. 하청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 하청업체의 특징

- ✓ 하청업체는 원천적으로 원청에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게 됨
- ✓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기간, 하청업체와 물량팀 간의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 원청은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하는 하청업체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맺고,
- ✓ 다른 기업과 달리 "영업 활동, 생산활동....보다 **대부분 인건비 또는 보험료를 절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 하청노동자의 경우

- ✓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이 희생
- ✓ 사회보험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사회안전망으로도 보호 받지 못함
- ✓ 도급관계의 하청노동자들의 경우, 제한된 시간 내에 주어진 물량을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구조 속에서, 산재 인정 후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안전 교육 등은 노동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옴

■ 1. 하청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 ✓ 산재가 발생하면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재계약 시 불이익을 받음-하청업체가 산재신고를 기피
- ✓ 계약연장에 실패할 수 있어 가능하면 공상처리를 함
- ✓ 산재 인정을 하지 않고 싶어 함

• 콜센터 하청노동시장의 경우

✓ 사용사업주와 고용사업주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간접고용구조로 인해 고충처리를 위한 의견 개진을 할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음

■ 2. 종사상지위에 따른 배제의 문제

- 노동자가 재해를 경험하면 즉각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상품성이 떨어져, 소득보장이 위태로워짐
-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음
 - ✓ 비정규직, 프리랜서, 1인사업장 자영업, 특고인 경우가 많음
 - ✓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생존노동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관계로, 산재 신청이전에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음
- 플랫폼 기업측의 경우
 - ✓ 산재보험 가입이 고용관계의 성립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함, 즉 고용 관계에 준하는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
 - ✓ 공적 사회보험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장하기보다는 별도의 사적보험에 의존하는 경향

-플랫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와 상병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구조

■ 3. 대체인력 부재의 문제

- 하청구조의 대체인력 부재의 문제와 관련- 최소비용으로 인원 확보
- 예를 들어, 최소의 인원으로 청소하고 있어 한 명이 아픈 경우 즉각적으로 필요한 대체인력이 부 족
-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자리를 비울 경우 남은 동료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산재 보험 신청에 있어서도 노동자는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자신이 산재 경험해 아프거나, 또는 아파서 이후 산재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도 대체인력이 부재하니 일을 지속하거나 사적으로 대체인력을 보완하여 개인의 고용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음

- 원인 파악의 모호성과 산재인식의 문제
- 업체가 자주 바뀌는 원-하청 구조의 특성상 어느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발생된 산재인지 판단하 기가 어려움
 - ✓ 업체의 변경으로 산재의 책임 주체가 모호해짐
 - ✓ 신체적 노동을 하는 하청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가장 필요성이 자주 언급 되는 반면, 산재보험 제도 경험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경우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공상 처리" 되었음
 - ✓ 특히,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 반복되는 작업이 건강을 해침 그렇지만, 업무와 상병의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려움 (서비스 하청노동의 경우도 복합적으로 인과성을 밝히기 어려움)

■ 4. 원인 파악의 모호성과 산재인식의 문제

- 콜센터 작업장에서는 업무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사전교육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개 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면서 산재신청은 전혀 고려되지 않음
- 특히, 프리랜서들은 정해진 작업장 개념이 부재하고 근로시간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정해진 노동을 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산재보험제도가 이들을 포괄하기 어려움
- 프리랜서는 일과 쉼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하다가 아프다'라는 개념도 적용시키기 어려워 보이고 '자기관리' 차원의 문제로 간주했음

3. 드러나는 고용보험의 한계들

고용보험제도의 다차원적 허구성

불안정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제도간의 부정 합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질적연구 결 과:

불안정노동자와 고용보험의 부정합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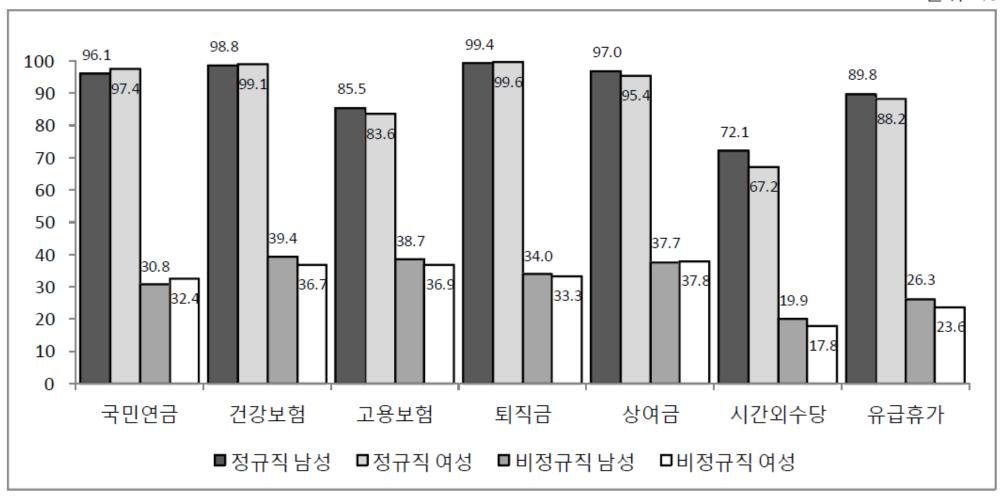
문제의 핵심:

- 1) 이미 실질적 제도 배제율이 높음
- 2)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이 매우 낮은 반면,시장소득의 한계효용은 매우 큼-> 급여보다 안좋은 일자로 다시 진입
- 3) 직업훈련의 효용이 낮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진입하고자 함
- 4) 고용관계 모호성을 넘어서 액화노동의 모습에서 경활과 비경활의 경계도 모호함

순번	내용
	이승윤, 김은지, 박고은. (2017). 한국 사회안전망 밖의 하청노동자: 울
1	산지역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례 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4(2),
	111-143.
2	이승윤, 김기태. (2017).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아픈 노동자
2	<u>의 빈곤화과정</u> 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한국사회정책, 24(4), 113-150.
	이승윤, 서효진, 박고은. (2018). 한국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
3	(precarious) 한가?- 여성 청소노동자 와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한국
	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 41-70.
4	이승윤, 조혁진. (2019). 콜센터 하청노동자 의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사
4	회보장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35(2), 1-34.
	이승윤, 박경진, 김규혜. (2019). 한국 청년프리랜서 의 일의 방식과 사
5	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판사회정책, (64), 181-239.
6	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2020) 한국 플랫폼노동시장의 노동과정 과 사
	회보장제의 부정합. 한국 산업노동학회지 2020년 6월 게재 예정

[그림 3] 한국 성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 및 근로조건 (2015년)

단위: %



자료: 통계청(2016a).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본자료(마이크로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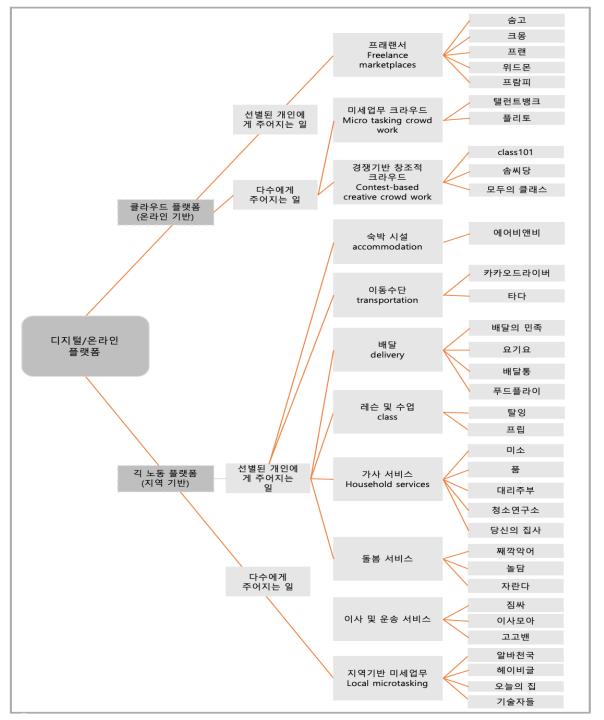
#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비교연구>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한국사회정책 2016)

I. 한국 플랫폼 기업 유형 분류

(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2020)

- 공통점
- I. 플랫폼 기업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구매자를 중개 하며, 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창출
- 2. 플랫폼들의 등장과 확대가 ICT 기술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온라인 기반 및 지역기반의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도 존재
- 플랫폼을 사용하는 가맹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하나의 앱(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

<그림 1> 한국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의 분류



플랫폼 노동유형에 따른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 경험 비교 <표 3> 플랫폼 노동유형에 따른 노동과정과 사회보장제 경험 비교

노동과정과 플랫폼노동유형 사회보장제경험		지역기반플랫폼		동유영에 따른 도롱과정과 자회모정제 경험 온라인 기반 플랫폼	
		배달	가사서비스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시장과 일의 방식	플랫폼기업 (기능/역할)	소비자-음식점-라이더 중개	소비자-매니저 중개 및 관리 (서비스 질 관리)	소비자-전문가 중개만	
	일감수주	위탁계약, 플랫폼 선택	회원가입,주문자선택	회원가입, 전문가프로젝트 등 등 록 주문자선택	
	숙런형성	개별적/사적+라이더 간 교류채널	개별적/사적+플랫폼메뉴얼	개별적/사적	
	일의 대가	플랫폼기업결정 	플랫폼기업결정 + 소비자와 협상	소비자와 협상	
보상과통제	근로시간	개별적 결정 + 플랫폼 기업결정	개별적 결정 + 플랫폼 기업결정	개별적 결정 + 소비자와 협상	
	노동 통제	플랫폼기업 (콜 배치 등)	플랫폼기업(매니저 등급제) +소비자(고객평점)	소비자(고객평점)	
사회보장	산재보험	사고 등의 산재 위험 가능성 높음 / 산재보험 욕구 높음	중간 수준의 산재 위험 및 보험 욕 구	산재 위험 및 보험 욕구가 비가시 적	
	고용보험 및 소득보장	실업개념 모호 +소득보장 욕구 있음			

그리고 코로나19...

<김승섭, 이승윤. "코로나-19 재난의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불안정 노동자의 삶과 건강"> AC 6M, 직장갑질119 발표회 2020.06.22.

1998 Vs 2008 Vs 2020

- 1998년 외환위기
 - 1997년 1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취업자수 103만명 감소
 - 1998년 12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취업자수 160만명 감소
- 2008년 금융위기
 -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취업자수 25만명 감소
- 2020년 코로나19 위기
 -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취업자수 총 87만명 감소
 - 2020년 2월 대비 5월 기준 실업자 31만명 증가.

From <코로나 위기와 5월 고용동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AC 6M 서베이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 조사(2차)

조사대상	○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표본설계	○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 비례배분
표본크기	○ 1,000명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0년 6월 05일 ~ 6월 10일

		사례수	비율 %)
	서울	190	19.0
	인천/경기	312	31.2
	충청	111	11.1
지역별	전라	97	9.7
	경북	100	10.0
	경남	147	14.7
	강원/제주	43	4.3
성별	남자	573	57.3
ÖZ	여자	427	42.7
	20대	205	20.5
여려벼	30대	294	29.4
연령별	40대	331	33.1
	50~55세	170	17.0

		사례수	비율 %
	제조업	248	24.8
	도소매업	100	10.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133	13.3
업종별	건설업	84	8.4
	교육서비스업	135	13.5
	숙박및음식점업	76	7.6
	기타	224	22.4
	40시간 미만	180	18.0
근무시간별	40시간	369	36.9
<u> </u>	41~52시간 미만	287	28.7
	52시간 이상	164	16.4
	150만원 미만	132	13.2
임금수준별	150~300만원 미만	490	49.0
	300~500만원 미만	260	26.0
	500만원 이상	118	11.8

실직의 위험이 밑바닥부터 차오르고 있다

SQ5. 지난 일주일을 기준으로 귀하가 종 사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지난 일주일간 일을 하지 않았던 경우 지난 6개월간 했던 가장 주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상용직 노동자(정규직/무기계약직 급여생활자)
 - 2) 임시직 노동자(계약직 급여생활자)
 - 3) 일용직 노동자
 - 4) 아르바이트 시간제 노동자
 - 5)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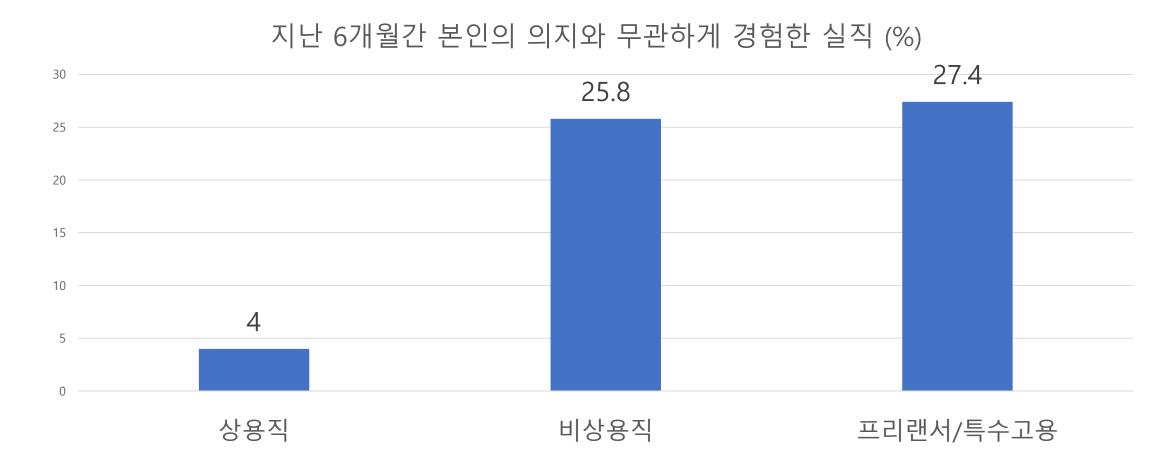


6)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

귀하는 지난 6개월간(2020년 1월 이후)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형태	설문 참가자	지난 6개월간 실직 여부		
		경험 없음 경험 있음		
		N (%)		
상용직	600	576 (96.0%)	24 (4.0%)	
비상용직	298	221 (74.2%) 77 (25.8%)		
프리랜서/특수고용	102	74 (72.6%) 28 (27.4%)		

- -상용직에 비해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프리랜서/특수고용은 7배, 임시일용직 등 비상용직은 6배 높게 실직을 경험.
- 상용직: 비상용직: 프리랜서/특고 => 4%: 25.8%: 27.4%.
- -이미 불안정한 노동자부터 실직의 위험을 불평등하게 경험.



가장 절박한 사람들은 실업보험 밖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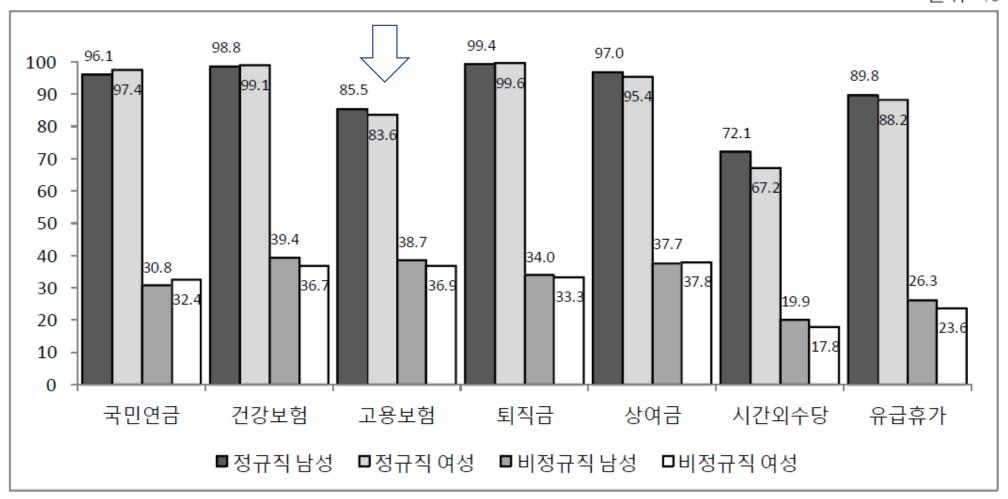
실업경험자 중 실업급여 수급여부

지난 6개월 실업경험자 129명 조사 결과

		지난 6개월간 실업급여 수급 여		
고용형태	실업경험자	받은적 있다.	받은 적 없다.	
		N (%)	N (%)	
상용직	24	8 (33.3%)	16 (66.7%)	
비상용직	77	19 (24.7%)	58 (75.3%)	
프리랜서/특수고용	28	4 (14.3%)	24 (85.7%)	

[그림 3] 한국 성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6) 적용 및 근로조건 (2015년)

단위: %



자료: 통계청(2016a).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본자료(마이크로 데이터).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비교연구>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한국사회정책 2016)

〈표 3〉 고용보험 적용과 가입 사각지대(2019)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 숫자는 전체 취업자의 49.4%		비임금 근로자 법적 시	취임 적용제외 - - - - - - - - - - - - - - - - - - -	업자 임금근로자 미가입 실질적 사각지대	가입
	근로자 수(1,000명)	6,799	3,249	3,781	13,528
	취업자 내 비중(%)	24.9	11.9	13.8	49.4
	임금근로자 내 비중(%)		15.8	18.4	65.8
	적용대상 근로자 내 비중(%)			21.8	78.2

주: 1)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주당 평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제외), 특수형태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8(시계열 보정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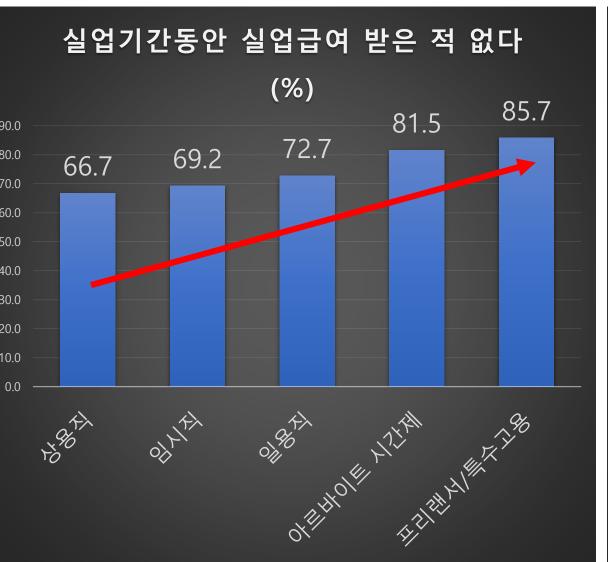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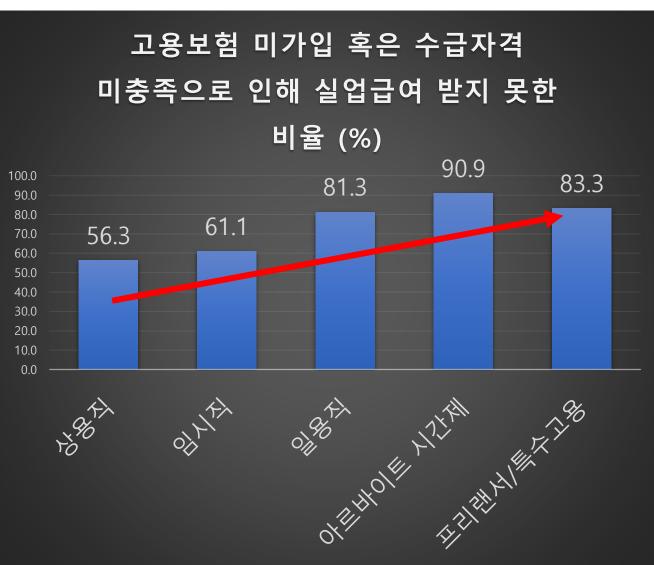
-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
- ②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함
- ③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
- ④ 신청자격을 충족시켰지만,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음
- ⑤ 기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미수급 이유			
고용형태	실업급여 미수급자	고용보험 미가입 혹은 수급자격 미충족	다른 이유		
		N (%)	N (%)		
상용직	16	9 (56.3%)	7 (43.7%)		
비상용직 58		46 (79.3%)	12 (20.7%)		
프리랜서/특수고용	24	20 (83.3%)	4 (16.7%)		
전체 98		75 (76.5%)	23 (23.5%)		

가장 절박한 사람들은 실업보험 밖에 있다





계속 일하고 있지만,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

지난 6개월 동안 직장에서 동료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수	일자리를 잃었다	노동시간이 줄었다	기본급 삭감 되었다	성과급(수당 및 보너스)이 줄었다	임금이 체불 되었다
상용직	600	100 (16.7)	141 (23.5)	72 (12.0)	135 (22.5)	29 (4.8)
비상용직	298	110 (36.9)	126 (42.3)	46 (15.4)	58 (19.5)	25 (8.4)
프리랜서/특수고용	102	37 (36.3)	59 (57.8)	31 (30.4)	32 (31.4)	7 (6.9)

* 직장 동료의 경험

- 노동시간감소
- 실직
- 성과급 감소
- 기본급 삭감
- 임금체불

지난 6개월간 5가지 부정적인 경험* 중한가지도 목격한 적 없음



	사례수 위에서 언급한 5가지 ⁻ 어느 것도 목격한 바 없			
상용직	600	310 (51.7)		
비상용직	298	80 (26.9)		
프리랜서/특수고용	102	15 (14.7)		

내 직장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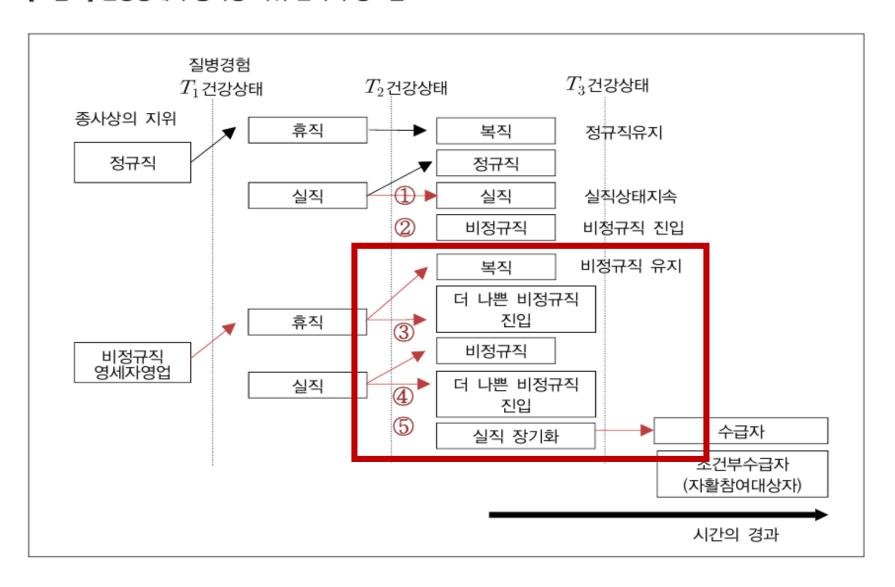
	설문참가자수	안전하지 않다.
상용직	600	204 (34.0)
비상용직	298	151 (50.7)
프리랜서/특수고용	102	55 (53.9)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비교연구> (이승윤, 안주영, 김유휘, 한국사회정책 2016)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이승윤, 김기태, 2017)

[그림 2] 건강상태와 종사상 지위 변화의 경로들



노동자 아닌 노동자들의 비명: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소파에 누운 채 숨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지



택배연대노조 "사 쪽이 장시간 노동 강요해 과로사" 주장 대한통운 "불명확한 내용이나 허위 주장 매우 유감"







40대 택배 노동자의 죽음..."한 달 평균 1만 개 배달"

입력 2020-05-06 20:21 수정 2020-05-06 20:23













근로기준법에 포괄되지 않는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불안정성이 높아져도, 노동자로조차 인정되 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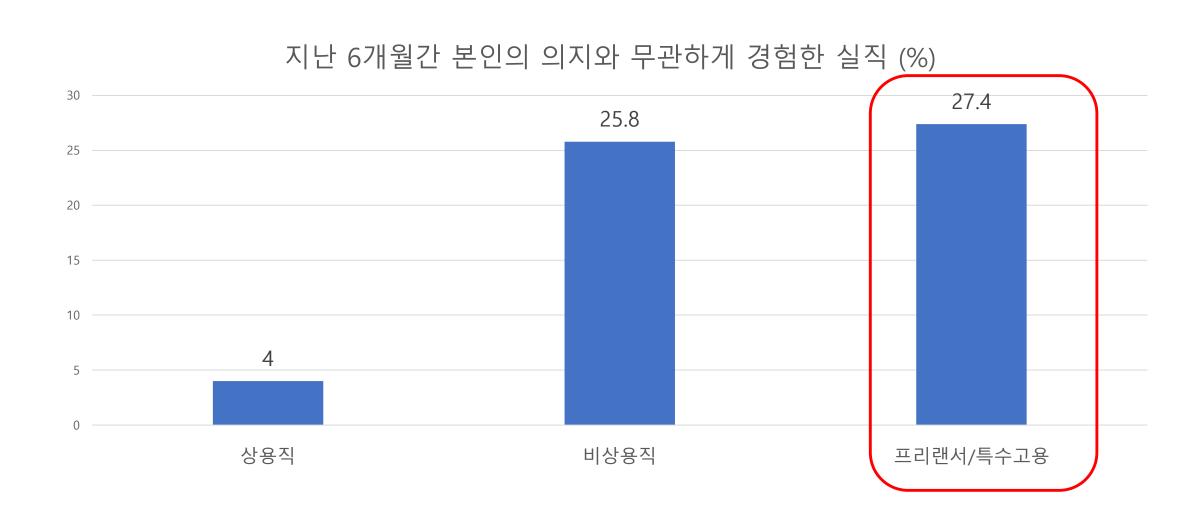
실직과 실업보험 배제, 근로시간과 소득감소 등 여러 면에서 다층 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임.

<표 2> 한국의 프리랜서와 표준적고용관계 근로자 간 사회보험 적용 수준 비교

		프리랜서	표준적고용관계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자격	- 원칙적으로 가입 자격 없음 - 프리랜서 예술인: 피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중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 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보험료 수준	프리랜서 예술인: 예술인 산재보험 사업을 통해 전체 보험료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50% 지 원(가입자 부담 50%)	전액 사업주 부담		
	가입 자격	- <u>원칙적으로 가입 자격</u> 없음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피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고용보험	보험료 수준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피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전체 보험료율 2.25% 전액 가입자 부담	전체 보험료율 1.55% 중 근로자 부담 0.65%, 사업 자 부담 0.9%		
	가입 자격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	전체 연금 보험료율 9.0% 전액 가입자 부담 프리랜서 예술인: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을 통해 전체 보험료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50% 지원(가입자 부담 50%)	전체 연금 보험료율 9.0% 중 근로자 부담 4.5%, 사용 자 부담 4.5%		
	가입 자격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국민건강 보험	보험료 수준	지역가입자2: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 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참작하 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	근로자 부담 3.12%, 사용자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이 승윤, 박경진, 김규혜, 2019)

- -상용직에 비해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프리랜서/특수고용은 7배로 실직 위험 높았음.
- 상용직: 비상용직: 프리랜서/특고 => 4%: 25.8%: 27.4%.



2020년 ¼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작년과 비교해 월평균 149만원을 번 하위 20%의 가구소 득은 그대로인 반면 월평균 1115만원을 버는 상위 20%는 가구소득이 6.3% 증가.

• 둘 사이의 소득격차는 **지난해 1분기 5.18배에서 5.41배로** 오히려 증가

귀하의 현재 월 소득은 6개월 전인 2020년 1월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설문참가자 전체 결과

	설문참여자	지난 6	지난 6개월간 소득 변화 [N (%)]			
고용형태	(N=1000) —	감소	동일	증가		
상용직 (A)	600	115 (19.2)	401 (66.8)	84 (14.0)		
비상용직 (B)	298	142 (47.7)	128 (43.0)	28 (9.4)		
프리랜서/특수고용(C)	102	69 (67.7)	23 (22.6)	10 (9.8)		
B/A		2.5	0.6	0.7		
C/A		3.5	0.3	0.7		

과제와 대안

불안정노동자 공통점: 생계를 위해 고단하게 일을 해야 하는 생존노동의 모습에서, 현재 복지제도들이 이들의 미시적 거시적 협상력 강화, 시장소득 의존도 약화,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포괄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짐

•제도 간 영향: 산재문제 해결에 있어 산재보험의 부정합적 측면 이외에도, 소득보장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와 노동시장(하청구조,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의 노동자 확대, 액화노동)의 부정합성이 복합적으로 **산재에도** 영향을 미침

<u>포스트 코로나가 촉발한 논쟁</u>

- 재난의 경험-사회경제적 변화로 기존의 제도들에 대한 인식 변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이 보여짐
-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재난을 경험하면서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새로운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
- 최근 코로나전염병의 확산으로 한국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전면적으로 드러나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는 발표
- **기본소득제, 전국민고용보험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가치는 "사회적연대", '서로가 서로를 책임' 그리고 **'누구나 불안정해질 수 있다**'

기본소득 반대론자

기존의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하거나 높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다른 영역 (특히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

일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맥락에서 우파들에 의해 "대체"가 주장될 뿐, 한국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제기하는 기본소득론자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기본소득 Vs 복지국가 또는 기본소득 VS 전국민고용보험 논쟁은 소모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함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소득과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 작업의 전제로 '어떤' 기본소득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할 것.

특히, 기본소득제가 구체적인 정책 설계 및 정치적 차원에서 논쟁이 되고 있어, 지금부터는 완전기본소득과 그 외의 것들을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정책의 발전 방향

-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이라는 재난을 경험하면서 특히 표준적고용관계에서 벗어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업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제안은 임금노동자의 범위를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해줄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 취업과 실직의 개념은 모호해졌는데 이에 더해, 이제는 경활인구와 비경활인구의 구분도 모호해졌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을 단념한 취준생, 플랫폼노동자, 최근의 코로나19 이후 청년의 실업율은 낮아지고 비경활인구는 확대됨).
- 최근 제안된 소득 보험(장지연, 홍민기 2020)은 실업보험의 자격기준을 실직여부가 아닌, 최소소득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개인 총소득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것임 (예를 들어 2년 동안 개인 총소득액 1,500만 원 혹은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함). 또한 구직 노력이 증명되어야 함.

- 소득보험의 기여금은 소득에 비례하거나, 기업주의 경우 매출이나 이윤에 비례하는 기여방식으로 기존의 노동비용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는 것에도 개입함. 또한 모호한 취업과 실직의 경계를 벗어나 제도적 실질적 포괄성이 높아질 수 있음. 소득비례형 사회보험으로, 노동시장에 맞춘 제도의 진화임.
- 다만, 취업과 실직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소득이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오랜 기간 동안의 취준생 및 고시생, 구직을 단념한 경력단절 여성, 돌봄과 가사노동과 같은 시장소득이 없으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 완화, '좋은 일자리'의 감소에 따른 수요자체의 감소에 대한 대응, 구직중 임을 증명하기 어려운 여러 액화노동 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 소득이 불충분할 경우 이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실업부조)로 해결될 것을 제안되고 있지만, 실 업부조는 앞서 설명한 노동자의 낮은 협상력, 가격매기기가 모호한 일들의 증가, 그리고 액화노동 의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오래된 것의 미래 도입은 부정합성을 이미 예상할 수 있게 함: 모호한 실직과 취직, 경활상태와 비경활상태, 숨은 노동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 협상력 강화에 기여하기 여러움.



- 1) 기본방향: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지원 강화
- 취업취약계층: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
- [유형 = 구직촉진수당
- II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제11차 일자리 위원회 개최, 고용노동부, 2019.06.04

- 몇 가지 정책 대안의 조합으로 제안하는 1차 소득안전망으로 [참여소득보장제]

1) 기본소득제: 사회의 공유부를 모두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지급

2) 일자리보장 (Job Guarantee): 일자리 보장(JG)는 일자리에 대한 공공의 개입으로 일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정부에서 관리되는 프로그램임. 최근 생태학적 관점에서 탈성장론에서뿐만 아니라 근로 조건 및 경제 전체를 개선할 수 있다는 등,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념과 여러 정책목표로 논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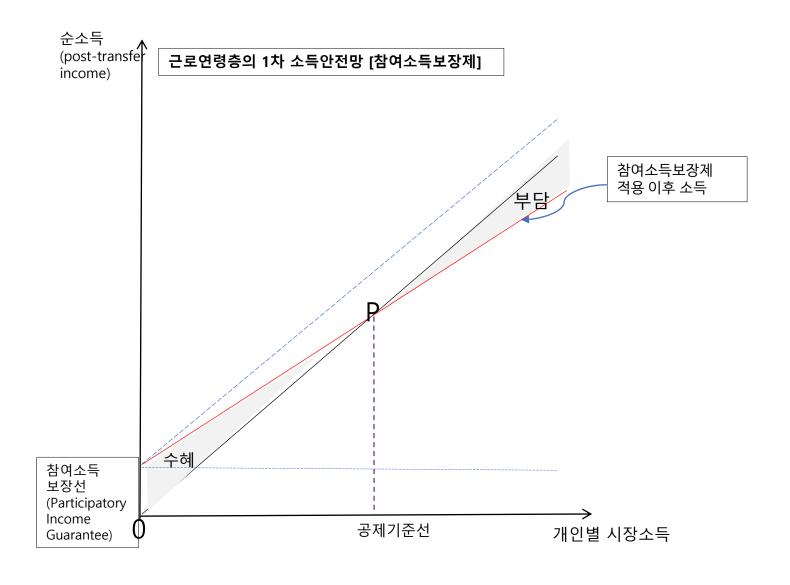
3) 참여소득: 경제적 안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격려할 수 있다고 설명 (토니 앳킨슨).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유급 고용 혹은 자영업, 교육, 훈련, 구직활동, <u>돌봄, 가</u> 사노동, 자원봉사 등을 포함하고,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소득/수당이 지급.**

4) 최저소득보장제 (Basic Income Guarantee): 부분 실업을 인정하는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최소소득보장제가 같이 실행된다 (네덜란드).

-참여소득보장제는 근로연령대의 모든 개인에게 참여소득수준을 보장하는, 기본적 소득보장 (basic income guarantee)이면서 동시에 <u>노동시장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임금노동자에서부터 일</u> 감을 찾는 구직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그리고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돌봄노동자 등, 인간의모든 다중활동을 인정하고 이들의 소득이 무조건적으로 참여소득선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또한 다양한 일을 '일'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일자리보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 -동시에, 참여소득보장세가 **정률소득세 방식으로 부과되어** 시장소득의 격차를 완화시키면서도 근로유인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요약하자면, 개인별 참여소득제보장제 적용 이후 순소득은 모두에게 참여소득을 보장하고, 동시에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의 참여소득보장세 체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참여소득보장제 (Participatory Income Guarantee)



하나의 예시)

- -공제기준선 P: 2100만원 (연간, 1인 가구 대략의 중위소득)
- -참여소득세율 t: 17% (아래 계산식에서 17.14%)
- -참여소득보장수준: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 현재 한국형 실업부조(최대 총 300만원)나 EITC(맞벌이 부부도 최대급여는 300만원)를 상회하는 수준임

시장소득	0 원	1000만원	1500만원	21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참여소득	360 만원	360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360 만원
참여소득세 적용후	0	830만원	1245만원	1743만원	3320만원	6640만원
총 순소득 (연간)	360만원	1190만원	1605만원	2100만원	3680만원	7000만원

- ▶ 확대되고 있는 노동의 다양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생존노동(이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생존)의 모습이 발견됨.
- ▶ 플랫폼 경제와 플랫폼 노동으로의 변화는 진공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체제의 발달과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노동의 미래' 그리고 복지국가의 진화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
- ▶ 단기적 정책적 대안과 함께, 근본적인 사회보장체계의 재편에 대한 검토가 필요
- ▶ 기존의 사회적 보호 시스템 및 유럽복지국가에 대한 신화화에서 벗어나, 한국의 노동시장에 조응하는 새로운 복지체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재고가 필요:
- ➤ 노동의 개념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 듯, 근로연령대의 소득보장제도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인정하고, 보다 권리기반의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대체가 아닌 layered) 다층체계를 구상해볼 필요 있음 -권리기반의 I층과 소득비례형의 2층 소득보장제도.

감사합니다

leesophiasy@gmail.com